

요 약

- ▶ 최근 환경부는 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관련된 내용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본 연구는 현행 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의 내용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 **개발 사업의 사전 환경성 검토를 환경영향평가 체제로 수용**
 - 사전 환경성 검토시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계획 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발 사업의 경우는 입지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환경 오염 저감 방법을 정성적·정량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나 현재는 큰 차이 없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친 후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경우 중복 평가 받는 부분이 있어 제도의 연계성이 떨어짐.
 - 현재 개발 사업의 경우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환경영향평가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소규모 개발 사업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에 준하여 간이 또는 약식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 **변경·조정 및 부동의시 개발 사업자의 의견개진 절차 마련**
 - 현행 제도에 의하면 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결과가 변경·조정 또는 부동으로 내려질 경우 개발 사업자는 결과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가 없어 사업을 포기하거나 불복할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가칭 ‘환경성검토회의’를 신설하여 변경·조정, 부동의, 반려의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반드시 개발 사업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 ▶ **환경 정보 DB의 구축**
 - 현재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취수원, 대기환경규제지역, 녹지 자연도 등 개발 입지 지정상 제한 요인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종합적인 도면 등 환경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아 사업자의 적정 입지 선정 애로 및 부적정 입지 선정에 따른 시행착오를 유발하고 있음.
 - 개발 사업자 또는 행정 계획의 수립 담당자들이 입지 선정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개발 입지의 선정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자료 작성을 위한 DB를 구축하여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 **기타**
 - 사전 환경성 검토서(구비 서류)의 작성시 입지의 적정 여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제출만으로 협의가 가능하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며, 사전 환경성 검토서 작성 용역 대가 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개발 계획 수립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융통성 있는 사전 환경성 검토 의견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원을 풀(Pool)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